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 정비>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6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임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 정비	2
IV.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30.
3. 회부연월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Ⅲ. 검토의견

1. 임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 정비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기업 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u>	제23조(임원의 해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기술보증기금법」은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조직 내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인식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

정안에 따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 차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동시에,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 대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를 가진 임원의 직무수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실무적으로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등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노동능력상실 등 신체감정과 관련된 기준도 맥브라이드(McBride)의 능력감퇴평가(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신체장애 평가지침(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등 다양함¹⁾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시 직무수행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기준이 현장에 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과 해석례 등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대한의사협의 연구사업 보고서, 「진단서 작성 해설서」, 2023.01.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총 67개 법률)이 다수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개정안²⁾의 심사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 6788-5459

2) <참고자료 : 동일(유사) 법률안 계류 현황>

IV. 참고자료

□ 심신장애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67건)

구분	제안일자	의안명	비고
1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법사위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등 7
2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국방위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등 2
3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환노위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법 등 3
4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행안위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법 등 5
5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문체위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등 3
6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과기정통위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등 6
7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정무위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등 10
8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농해수위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등 4
9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산중위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법 등 4
10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교육위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6
11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위한 기재위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등 4
12	2025-04-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2025-04-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2025-04-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2025-04-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2025-04-3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2025-0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2025-04-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2025-04-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2025-04-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중위 소관 4개 법률 : 무역보험법, 계량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불공정무역조사법